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4. 24 선고 2019가단69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4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0. 4. 19. 접수 제88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

판결)

판사김승현

별지